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종류를 알아봐요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해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

지속가능성/연대/협력/민주적인 운영

- **각 경제 주체의 만족도 향상**
  :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설립과 운영**
  : 민주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 및 만족도 향상
-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 기존 복지 시스템을 보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협동조합 새로운 창업 모델 확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협동조합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특징을 알아봐요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 · 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주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만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 3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 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소관부처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불가	배당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인증 신청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특징을 알아봐요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사업목적	회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회원당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차등 기준은 정관에 명시)			
	책임방식	유한책임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선택 가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회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개별법 협동조합 (신협, 생협)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임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만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납입 총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의무사항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 30/100이상	영리법인: 10/100 이상 비영리법인: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영리법인: 배당가능 비영리법인: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협동조합 함께해요

설립지원

상담지원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종합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

내실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 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지원

교 육

인재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경영공시

협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한 운영 지원 및 신뢰성 있는 경영공시 정보 제공

전문상시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으로 설립 ·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내실화 도모

판로지원

공공판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시장 진입 지원

민간판로

협동조합이 생산 · 판매하는 상품의 유통채널 진입지원 및 협동조합간 거래 확대 지원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Q.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저 출자금이 얼마인가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조합별로 자유롭게 정관에 1좌당 금액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합회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조례로 시 · 도지사가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 신고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A.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이란 무엇이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유형과 판단기준은 각 조합에서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사업 유형	주사업 내용 및 판단기준		
지역 사업형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판단기준 (택1)	사업비(지출)	수입 · 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판단기준 (택1)	서비스 공급 (서비스 대상 인원/시간/횟수)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인원/시간/횟수가 전체의 100분의 40이상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판단기준 (택1)	인건비	수입 · 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100분의 40 이상
		직원 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의 비율이 100분의 40이상
위탁 사업형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판단기준	사업비(수입)	수입 · 지출 예산서상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수입이 100분의 40 이상
기타공익 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판단기준 (택1)	사업비(지출)	수입 · 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혼합형	위 4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판단기준	-	위 유형 기준에 따름

Q.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을 통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 시 발급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참고바랍니다.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 · 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

① 설립 신고서 1부
② 정관 사본 1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⑤ 임원 명부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합병 ·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② 정관 사본 1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⑤ 임원 명부와 임원이력서(임원약력)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등)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합병 ·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연합회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3개소 이상 (이종연합회는 5개소 이상)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신고)
발기인 → 기획재정부

7 **설립인가증 발급**
(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확인증)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이내), 기획재정부→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회장

9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연합회 설립**

신청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신고서)
② 정관 사본 1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⑤ 임원 명부와 임원이력서(임원약력)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1부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합병 · 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 추가 증빙자료
① 세부사업계획서 1부
② 각 회원사별 증빙자료(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이사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출자자(조합원)명부) 각 1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

기관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주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9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044-202-5621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044-200-7057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서비스정책과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6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9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담당관 5층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5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0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043-719-7682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00-5696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7층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471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새마을발전협력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3060	총괄 부서 부재로 담당 부서 확인 후 신청 필요

*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23.2.1. 기준)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안내

협동조합 설립 · 운영 · 경영공시 상담지원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20~1	gwse0524@naver.com
경기 북부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27, 상가동 105호	070-4196-7748	ggsec7@gmail.com
경기 남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동 2층 203호	055-286-7971	md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북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301호	053-942-8002	coop@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coop@socialcenter.kr
대구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5층	053-942-8001	dg_coopcenter@cne.or.kr
대전 세종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대로2번길 15, 3층(어은동)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211호(보람동)	042-331-0211	coop10004@gmail.com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2층	051-517-0270	coop@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200호	02-365-0330	coop@joyfulunion.or.kr
울산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87, 5층 동산빌딩	052-277-5334	sv1004@kakao.com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inseca@daum.net
전남	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가동 208호 (빛가람동)	061-335-0125	jrsc00@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6층	063-213-2244	jbse2019@gmail.com
제주	사단법인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이도일동)	064-726-4843	jejusen_secoop@jejuhub.org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남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3,4층	041-415-2012	cnsecoop@gmail.com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67-9010	post@cbse.kr

협동조합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

협동조합 인스타그램
@coop_cooperative

협동조합 유튜브
채널 : 협동조합

협동조합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oop_2012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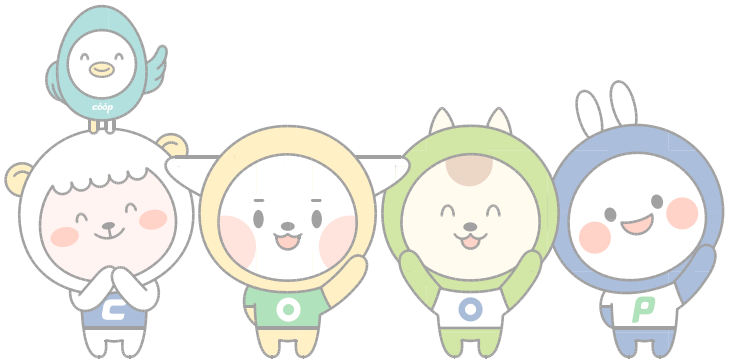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협동조합 설립안내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